

■ (언론 동향) 2022.4.5. “한국농어민신문” 보도

○ 우량비료 지정제 도입 17년, 지정제품은 ‘0’

- 신규비료공정규격 조항 삭제 등
- 법령 정비해 실효 제고 여론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우량비료’ 지정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규 비료 공정규격 설정’ 조항 삭제 등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비료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 개발한 비료나 품질을 개선한 비료가 농업환경 및 토양 보호와 농업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심의를 거쳐 우량비료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우량비료로 지정·고시된 제품은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등에서 우량비료 지정 제품으로 농업인들에게 홍보·안내 할 수 있고, 또 우량비료 개발과 보급 촉진을 위해 정부가 우량비료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다. 우량비료 생산 업체 입장에서선 지자체·농협 등의 홍보가 마케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다. 또 우량비료의 경우 지자체 보조 사업 품목 선정에도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우량비료 지정 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비료업체에서 이 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고시를 보면 우량비료 지정 신청 시 ‘공정규격 설정 등을 요청한 자’에 한해 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비료에 대한 새로운 공정규격 설정을 요구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비료업계 관계자는 “이미 설정돼 있는 비료 공정규격이 많아 업체 입장에서 새로운 공정규격에서 생산한 비료라고 주장해도 심의 과정에선 기존 공정규격으로 평가받는다”며 “새로운 공정규격을 설정해야 하는 부분이 비료업체들의 우량비료 지정 신청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이유 탓에 지난 2005년 우량비료 지정 제도가 마련된 이후 만 17년이 다 돼 가는 지금까지 우량비료로 지정 된 제품은 단 한 건도 없는 상태다. 이에 2021년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비료업계에선 기존 공정규격 내에서도 우량비료 지정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비료 개발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비료업체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정규격 설정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우량비료 지정 신청 요건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한 비료업체 관계자는 “별도의 공정규격 없이도 새로운 기능을 바탕으로 품질을 개선해 우량비료 지정 조건인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2. 4. 6.(수)

농업환경 및 토양 보호, 농업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는 비료 신제품 개발이 가능하다”며 “이미 비료업체들은 기존 비료의 종류 내에서 새로운 기능을 부가한 비료를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관련 기관인 농진청에서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고시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시간은 다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진청 관계자는 “현재 우량비료 지정과 관련한 비료업계의 제도개선 의견을 포함해 고시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며 “다만, 모법인 비료관리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 우정수 기자 >